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6년 4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8% 증가(전월대비 0.8%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15.1%), 석유정제(9.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8.7%), 전자부품(-12.7%), 기계장비(-9.5%)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함(전월대비 1.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3.0%),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7.4%), 도소매(2.9%)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함(전월대비 0.5% 증가).

◆ 2016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7.9%), 화장품 등 비내구재(3.1%), 의복 등 준내구재(1.9%)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함(전월대비 0.5%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9.8%)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전월대비 3.4%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에서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함.

◆ 2016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 상승함.

◆ 2016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0.1% 상승)

○ 2016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66(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함(전월 대비 변동 없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음식·숙박(2.4%), 교육(1.6%), 식료품·비주류음료(0.8%)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3.0%)은 하락함.
- 2016년 5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2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함(전월대비 0.1% 감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3					2014					2015p					2016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4월	1/4p	4월p
생산	광공업 생산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2.2	-0.3	-2.8(-1.3)
	제조업 생산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2.3	-0.4	-2.8(-1.2)
	출하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1.5	-0.9	-1.8(-1.6)
	내수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5	0.8	-1.7(-2.4)
	수출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2.9	-2.9	-2.0(-0.6)
	서비스업 생산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4.3	2.8	2.1(0.5)
소비	소비재 판매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5.4	4.5	4.2(-0.5)
투자	설비투자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2.6	-7.1	-2.7(3.4)
물가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0.5	1.1	0.8(0.0)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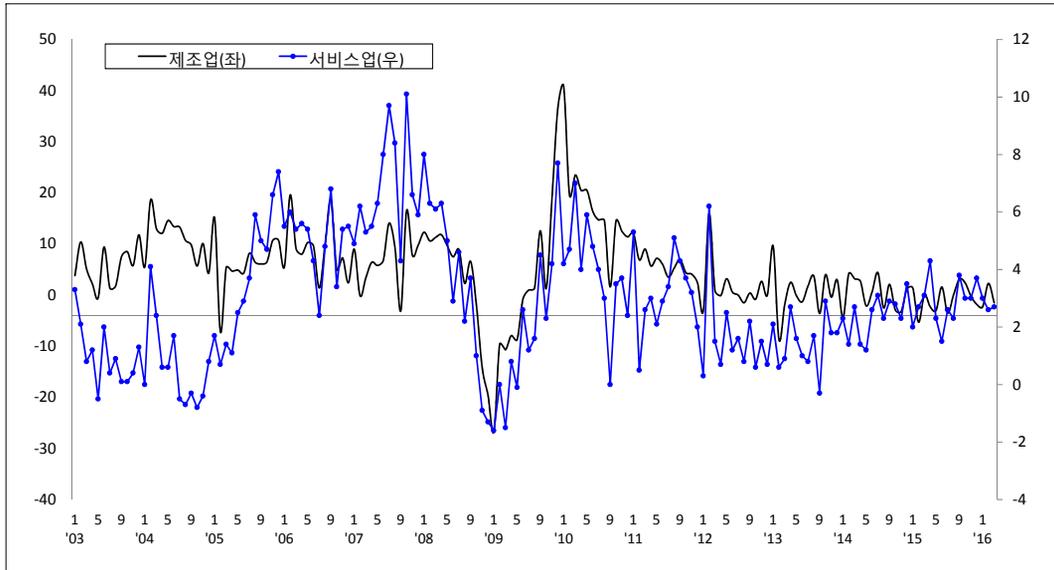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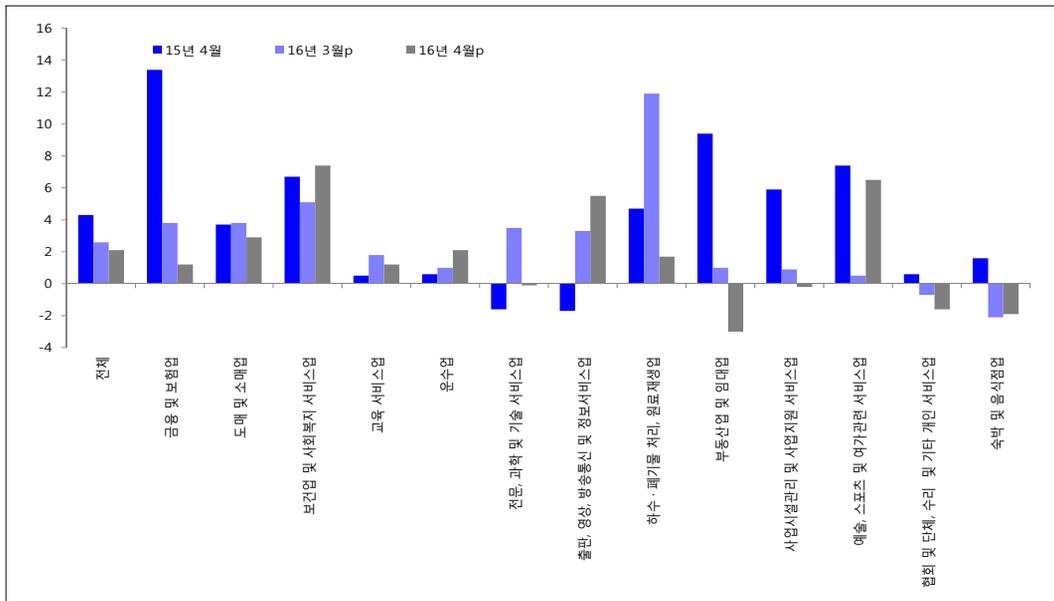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6년 3, 4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6. 5), 『2016년 4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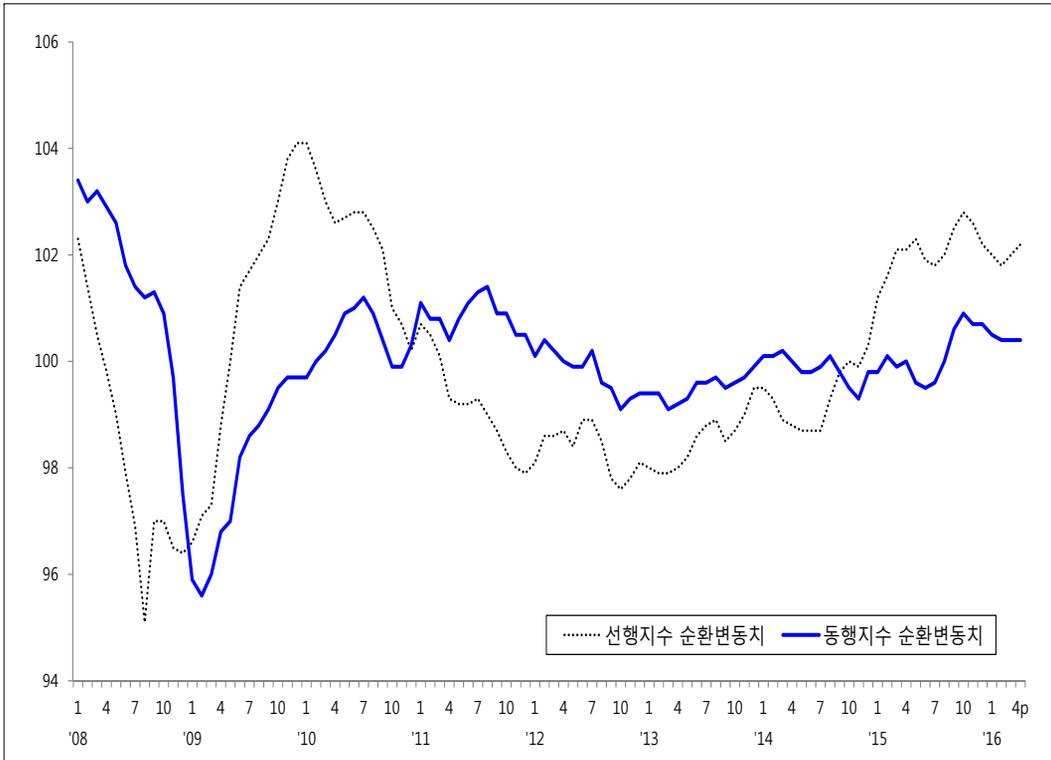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고용 동향

◆ 취업자, 고용률 증가세 지속

- 2016년 5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4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 명(0.9%)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800천 명으로 122천 명(0.8%) 증가하였고, 여성은 11,655천 명으로 122천 명(1.1%) 증가하였음.
- 2016년 5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3%)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52.7%)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2016년 5월 중 취업자는 26,4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1천 명(1.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5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55천 명 증가해 여성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2015년 하반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2016년 5월 중 고용률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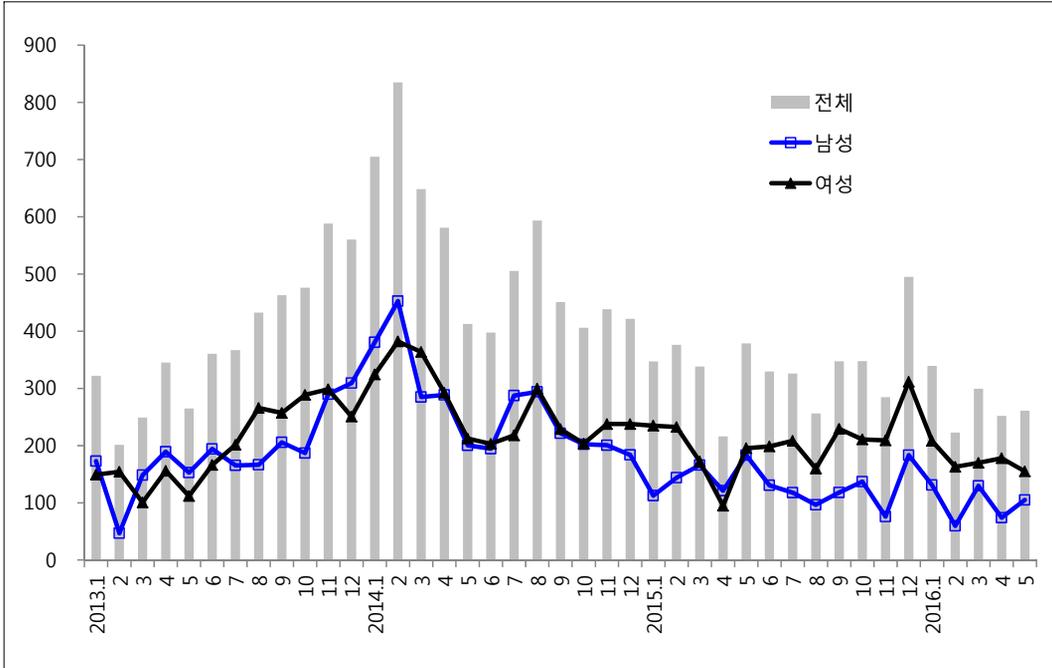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경제활동인구	26,622 (2.1)	26,356 (1.6)	27,140 (1.4)	27,211 (1.7)	27,166 (1.3)	26,989 (1.4)	26,708 (1.3)	27,228 (1.0)	27,455 (0.9)
참가율	62.4	61.5	63.2	63.3	63.0	62.5	61.7	62.8	63.3
취업자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37 (1.2)	26,143 (1.5)	25,554 (1.1)	26,153 (1.0)	26,450 (1.0)
고용률	60.4	59.0	60.7	60.9	60.9	60.5	59.1	60.3	61.0
실업자	854	1,089	1,042	1,022	929	845	1,153	1,075	1,005
실업률	3.2	4.1	3.8	3.8	3.4	3.1	4.3	3.9	3.7
비경제활동인구	16,066 (-0.6)	16,469 (0.4)	15,835 (1.0)	15,764 (0.5)	15,921 (1.0)	16,194 (0.8)	16,568 (0.6)	16,120 (0.9)	15,932 (1.1)

주 : 특별한 언급이 없는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6. 6), 『2016년 5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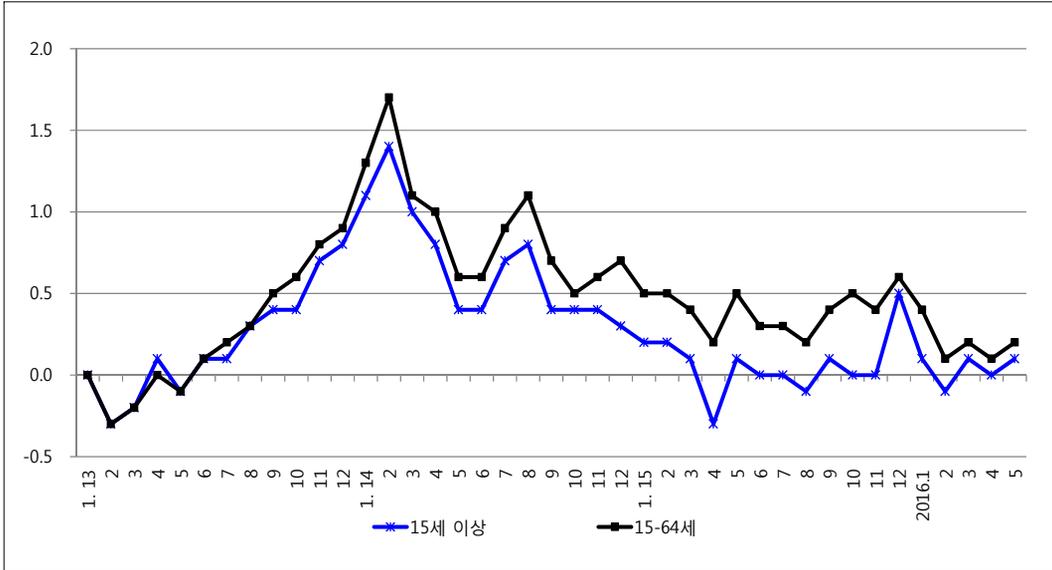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의 고용률은 71.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2%p 상승한 66.3%를 기록함(그림 2 참조).
- 2016년 5월 중 실업자는 1,0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59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10천 명으로 33천 명 감소하였음.
- 2016년 5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9천 명(1.1%)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천 명 증가(2.1%)한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천 명 증가한 10,460천 명을 기록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85천 명으로 전년대비 140천 명(9.7%) 증가한 반면,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학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01천 명으로 67천 명(-1.6%) 감소함.

[그림 2]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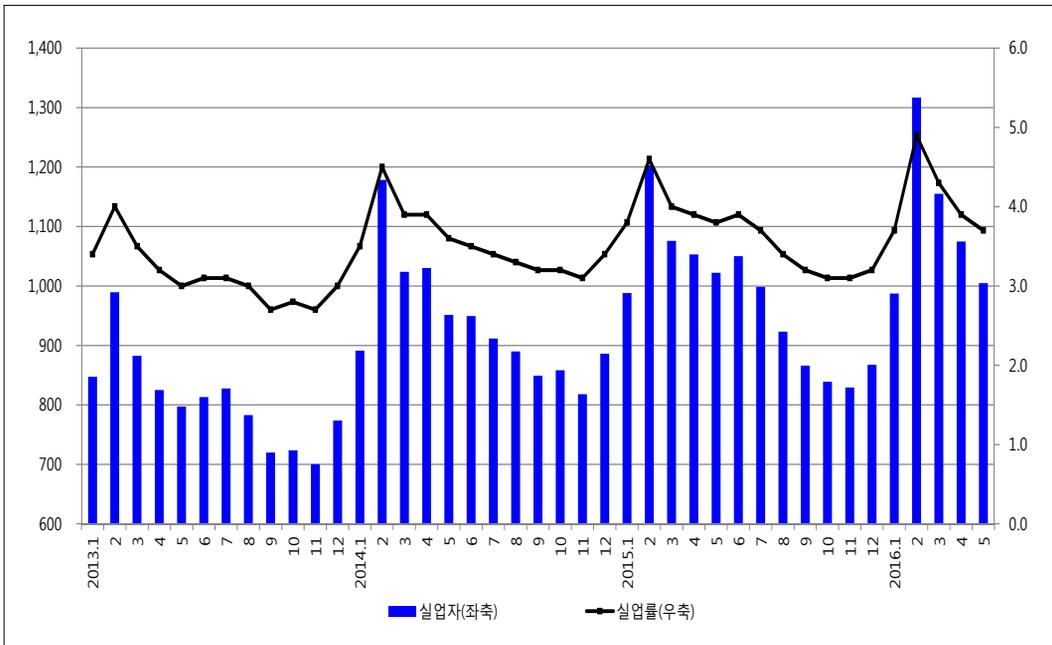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증가 지속

- 2016년 5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72천 명, 1.8%), 50~59세(83천 명, 1.4%), 60세 이상(162천 명, 4.2%)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20천 명, -0.4%), 40~49세(-37천 명, -0.6%)에서는 감소함.
- － 교육정도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대졸 이상(408천 명, 3.6%), 고졸(34천 명, 0.3%)에서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181천 명, -4.0%)에서는 감소하였음.

〈표 2〉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5월	
전 체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37 (1.2)	26,143 (1.5)	25,554 (1.1)	26,153 (1.0)	26,450 (1.0)
15~29세	3,855 (1.5)	3,872 (0.8)	3,933 (2.3)	3,964 (3.0)	3,991 (1.3)	3,955 (2.6)	3,911 (1.0)	3,945 (1.1)	4,036 (1.8)
30~39세	5,722 (-0.5)	5,671 (0.0)	5,665 (-1.0)	5,673 (-0.8)	5,681 (-1.0)	5,686 (-0.6)	5,650 (-0.4)	5,620 (-0.4)	5,653 (-0.4)
40~49세	6,700 (0.1)	6,598 (-0.7)	6,690 (-0.2)	6,687 (-0.1)	6,679 (0.0)	6,707 (0.1)	6,604 (0.1)	6,632 (-0.8)	6,650 (-0.6)
50~59세	5,926 (3.3)	5,861 (3.1)	6,016 (2.3)	6,029 (2.5)	6,036 (2.5)	6,061 (2.3)	5,945 (1.4)	6,059 (1.3)	6,112 (1.4)
60세 이상	3,565 (6.0)	3,265 (6.3)	3,793 (4.1)	3,837 (4.6)	3,850 (4.7)	3,735 (4.8)	3,444 (5.5)	3,897 (5.6)	4,000 (4.2)
중졸 이하	4,472 (-3.5)	4,070 (-3.3)	4,495 (-3.6)	4,520 (-3.5)	4,461 (-3.3)	4,304 (-3.8)	3,905 (-4.1)	4,250 (-4.2)	4,339 (-4.0)
고졸	10,229 (3.0)	10,117 (2.1)	10,244 (1.8)	10,269 (2.0)	10,317 (0.9)	10,334 (1.0)	10,142 (0.2)	10,212 (0.0)	10,303 (0.3)
대졸 이상	11,067 (2.7)	11,080 (2.6)	11,360 (2.6)	11,400 (3.1)	11,458 (3.3)	11,505 (4.0)	11,508 (3.9)	11,690 (3.9)	11,808 (3.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6. 6), 『2016년 5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6년 5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64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8천 명(1.9%)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8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천 명(-1.4%)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987천 명으로 470천 명(3.8%), 임시근로자는 5,215천 명으로 158천 명(3.1%)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441천 명으로 270천 명(-15.8%)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66천 명으로 59천 명(-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5천 명으로 12천 명(-0.3%), 무급가족종사자는 1,175천 명으로 27천 명(-2.3%) 감소하였음.

○ 2016년 5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30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8천 명(2.4%)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7천 명(0.7%) 증가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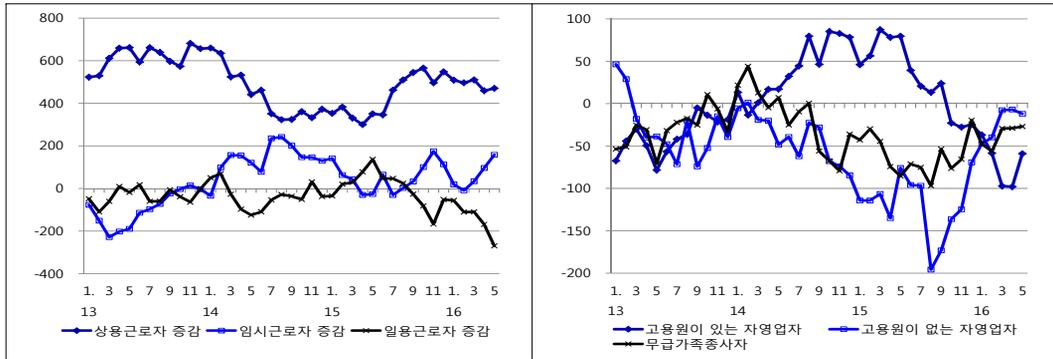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5월	
전 체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37 (1.2)	26,143 (1.5)	25,554 (1.1)	26,153 (1.0)	26,450 (1.0)
비임금근로자	6,799 (-0.8)	6,509 (-1.3)	6,871 (-1.6)	6,904 (-1.2)	6,836 (-3.0)	6,610 (-2.8)	6,369 (-2.1)	6,686 (-2.0)	6,807 (-1.4)
자영업자	5,625 (0.1)	5,463 (-0.9)	5,675 (-0.6)	5,702 (0.1)	5,623 (-2.4)	5,490 (-2.4)	5,368 (-1.7)	5,551 (-1.9)	5,632 (-1.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74 (5.5)	1,570 (4.2)	1,619 (4.2)	1,625 (5.1)	1,587 (1.3)	1,549 (-1.6)	1,506 (-4.1)	1,531 (-6.0)	1,566 (-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51 (-1.8)	3,893 (-2.8)	4,056 (-2.5)	4,077 (-1.8)	4,037 (-3.7)	3,941 (-2.7)	3,862 (-0.8)	4,020 (-0.2)	4,065 (-0.3)
무급가족종사자	1,175 (-4.9)	1,046 (-3.6)	1,195 (-6.1)	1,202 (-6.6)	1,212 (-5.8)	1,121 (-4.6)	1,001 (-4.2)	1,135 (-2.5)	1,175 (-2.3)
임금근로자	18,968 (2.6)	18,758 (2.4)	19,227 (2.2)	19,285 (2.4)	19,401 (2.8)	19,533 (3.0)	19,185 (2.3)	19,467 (2.0)	19,643 (1.9)
상용근로자	12,280 (3.0)	12,341 (3.0)	12,507 (2.7)	12,517 (2.9)	12,686 (4.1)	12,817 (4.4)	12,846 (4.1)	12,907 (3.7)	12,987 (3.8)
임시근로자	5,076 (2.9)	4,918 (1.7)	5,066 (0.1)	5,058 (-0.5)	5,155 (0.0)	5,205 (2.5)	4,932 (0.3)	5,112 (1.9)	5,215 (3.1)
일용근로자	1,612 (-1.2)	1,500 (0.3)	1,654 (5.5)	1,710 (8.6)	1,560 (0.9)	1,511 (-6.3)	1,408 (-6.2)	1,448 (-10.5)	1,441 (-15.8)
36시간 미만	3,659 (7.8)	3,689 (2.7)	3,661 (7.8)	3,642 (7.7)	4,848 (-7.3)	3,795 (3.7)	3,816 (3.4)	7,045 (89.3)	3,730 (2.4)
36시간 이상	21,779 (0.7)	21,091 (1.3)	22,120 (0.1)	22,259 (0.6)	20,895 (3.5)	22,034 (1.2)	21,206 (0.5)	18,804 (-14.1)	22,406 (0.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6. 6), 『2016년 5월 고용동향』.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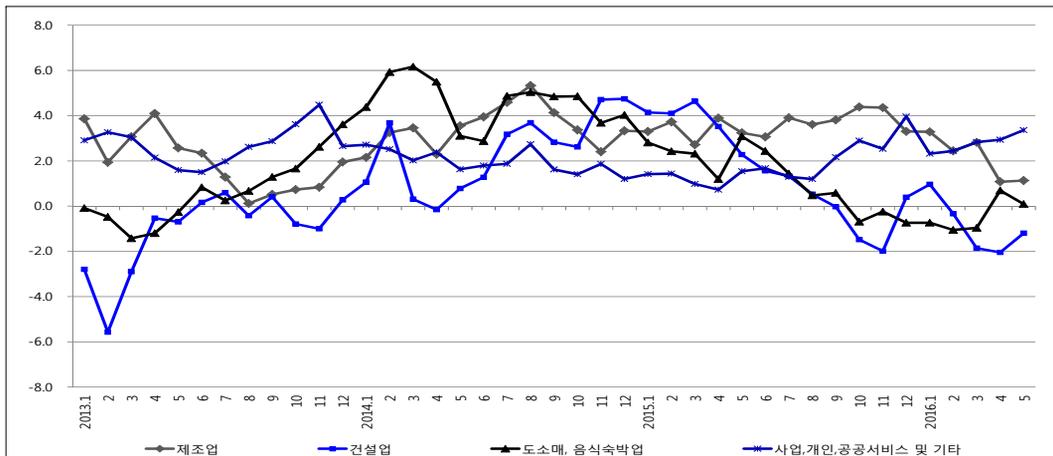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6년 5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9천명, 4.9%), 숙박 및 음식점업(88천명, 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5천명, 7.3%),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2천명, 7.4%)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99천명, -6.5%), 도매 및 소매업(-83천명, -2.2%), 여가관련 서비스업(-33천명, -7.5%) 등에서는 감소함.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4월			4월	5월
전 산업	25,767 (1.7)	25,267 (1.4)	26,098 (1.2)	26,189 (1.5)	26,237 (1.2)	26,143 (1.5)	25,554 (1.1)	26,153 (1.0)	26,450 (1.0)
농림어업	1,395 (-7.2)	1,092 (-7.4)	1,505 (-7.7)	1,534 (-7.4)	1,494 (-6.8)	1,289 (-7.6)	1,038 (-4.9)	1,369 (-4.1)	1,435 (-6.5)
제조업	4,374 (3.0)	4,418 (3.2)	4,466 (3.4)	4,464 (3.2)	4,511 (3.8)	4,550 (4.0)	4,544 (2.9)	4,503 (1.1)	4,514 (1.1)
전기·가스·증기·수도	88 (0.0)	91 (13.8)	91 (13.1)	89 (9.9)	92 (11.2)	97 (10.2)	92 (1.1)	90 (-5.3)	91 (2.2)
하수, 원료재생·복원	89 (12.7)	89 (11.0)	89 (-1.8)	92 (1.1)	89 (-1.0)	86 (-3.4)	91 (2.2)	98 (11.4)	97 (5.4)
건설업	1,854 (4.0)	1,756 (4.3)	1,857 (2.4)	1,862 (2.3)	1,844 (0.6)	1,835 (-1.0)	1,748 (-0.5)	1800 (-2.1)	1,840 (-1.2)
도매 및 소매업	3,848 (3.4)	3,848 (2.0)	3,775 (0.8)	3,775 (0.9)	3,763 (-0.9)	3,746 (-2.7)	3,720 (-3.3)	3694 (-2.1)	3,692 (-2.2)
운수업	1,402 (-1.3)	1,402 (-1.2)	1,410 (0.1)	1,409 (0.1)	1,415 (1.1)	1,411 (0.6)	1,432 (2.1)	1424 (0.6)	1,424 (1.1)
숙박 및 음식점업	2,143 (5.7)	2,136 (3.5)	2,152 (4.8)	2,175 (7.0)	2,216 (4.0)	2,212 (3.2)	2,210 (3.5)	2233 (5.7)	2,263 (4.0)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3 (3.6)	749 (6.5)	773 (5.5)	770 (5.5)	782 (10.6)	782 (9.7)	764 (2.0)	755 (-1.9)	771 (0.1)
금융 및 보험업	813 (-5.1)	788 (-7.7)	789 (-6.8)	797 (-5.6)	787 (-5.9)	792 (-2.6)	786 (-0.3)	779 (-0.6)	788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512 (2.4)	514 (1.4)	535 (7.9)	532 (7.0)	539 (4.5)	551 (7.6)	557 (8.4)	538 (2.9)	562 (5.6)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030 (0.8)	1,022 (-0.2)	1,029 (1.2)	1,034 (2.6)	1,064 (3.5)	1,077 (4.6)	1,081 (5.8)	1092 (8.2)	1,109 (7.3)
사업서비스업	1,197 (2.5)	1,202 (3.2)	1,261 (5.8)	1,267 (5.6)	1,257 (7.6)	1,275 (6.5)	1,270 (5.7)	1294 (3.9)	1,307 (3.2)
공공행정 등	923 (-5.1)	865 (-6.5)	960 (-4.1)	961 (-4.7)	954 (-2.7)	966 (4.7)	918 (6.1)	1016 (6.3)	1,032 (7.4)
교육서비스업	1,829 (3.6)	1,802 (2.4)	1,803 (-0.4)	1,806 (0.1)	1,816 (-0.6)	1,849 (1.1)	1,804 (0.1)	1,839 (2.4)	1,851 (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749 (9.6)	1,694 (8.0)	1,776 (3.9)	1,789 (4.7)	1,795 (2.9)	1,814 (3.7)	1,750 (3.3)	1,844 (4.8)	1,877 (4.9)
예술·스포츠·여가	407 (2.5)	412 (7.3)	438 (15.3)	440 (15.8)	431 (6.9)	417 (2.5)	388 (-5.8)	389 (-12.8)	407 (-7.5)
협회·단체·수리·기타	1,273 (-4.0)	1,267 (-3.3)	1,277 (-3.2)	1,280 (-3.9)	1,276 (-1.5)	1,287 (1.1)	1,257 (-0.8)	1,287 (-0.1)	1283 (0.2)

〈표 4〉의 계속

	2014		2015				2016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4월	5월
가구내 및 자가	103 (-34.4)	94 (-27.7)	85 (-29.2)	85 (-27.4)	77 (-30.6)	73 (-29.1)	74 (-21.3)	70 (-21.3)	70 (-17.6)
국제 및 외국기관	17 (88.9)	18 (63.6)	17 (30.8)	16 (33.3)	20 (25.0)	19 (11.8)	17 (-5.6)	19 (18.8)	19 (18.8)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6. 6), 『2016년 5월 고용동향』.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6년 3월 명목임금상승률 3.4%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8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함.
 - － 2016년 3월 상용근로자(3,473천 원),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413천 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2.1% 증가하였음.
 - －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데는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한 정액급여(3.6%)의 증가에 기인하였음.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3	2014	2015	2016				
				1~3월	3월	1~3월	3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356 (3.1)	3,174 (3.9)	3,534 (5.3)	3,283 (3.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540 (2.8)	3,351 (3.5)	3,473 (3.6)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720 (3.0)	2,720 (2.6)	2,826 (3.9)	
	초과급여	184 (1.7)	201.445 (9.3)	216 (7.4)	208 (10.1)	220 (9.9)	217 (4.6)	228 (3.8)
	특별급여	537 (1.8)	516.414 (-3.7)	525 (1.6)	613 (0.0)	411 (6.6)	686 (11.9)	427 (3.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09 (-0.5)	1,384 (-0.3)	1,439 (2.1)	1,413 (2.1)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9.4 (0.6)	109.4 (0.4)	110.5 (1.0)	110.5 (1.0)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5	3.6	4.2	2.4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1~3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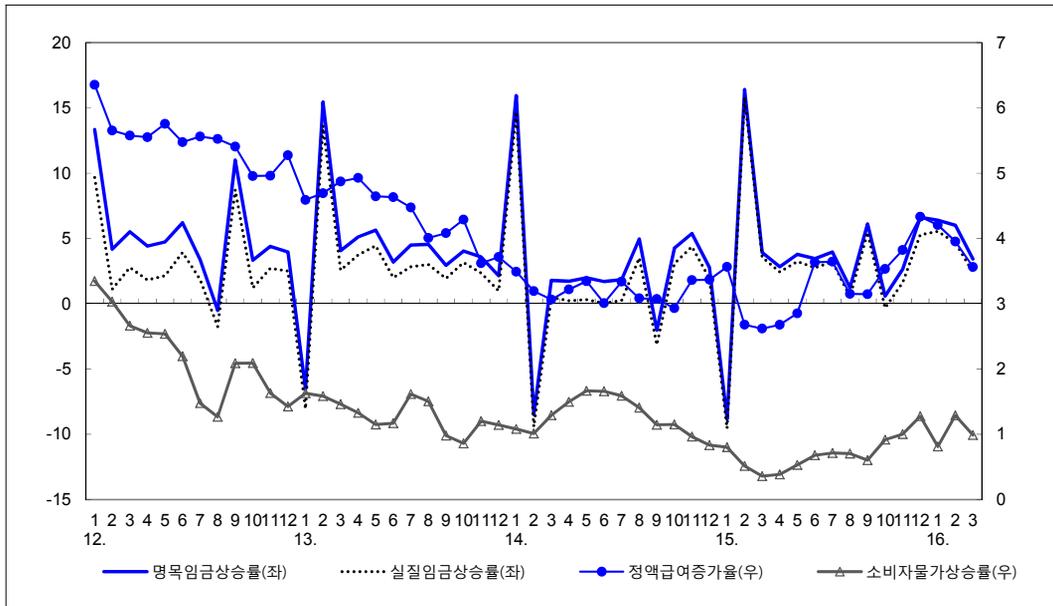
- 2016년 1~3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 5.3% 상승함.
 -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각각 5.3%, 2.1% 상승하였음.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최근 2~3% 내외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6년 들어서면서 2개월 연속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2016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5.3% 상승하였음. 이는 3%대 초중반에서 담보상대였던 정액급여가 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데다 특별급여의 증가에 기인함.
- 2016년 3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함.
 - 2016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 증가폭 둔화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둔화하였음.
 - 2016년 1~3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6% 상승하였음.

◆ 2016년 4월 협약임금인상률 5.0%

- 2016년 4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5.0%로 2015년 4월 인상률(4.4%)보다 0.6%p 상승함.
 - 2016년 4월 임금결정진도율은 6.6%로 전년동월(19.6%)보다 더딤.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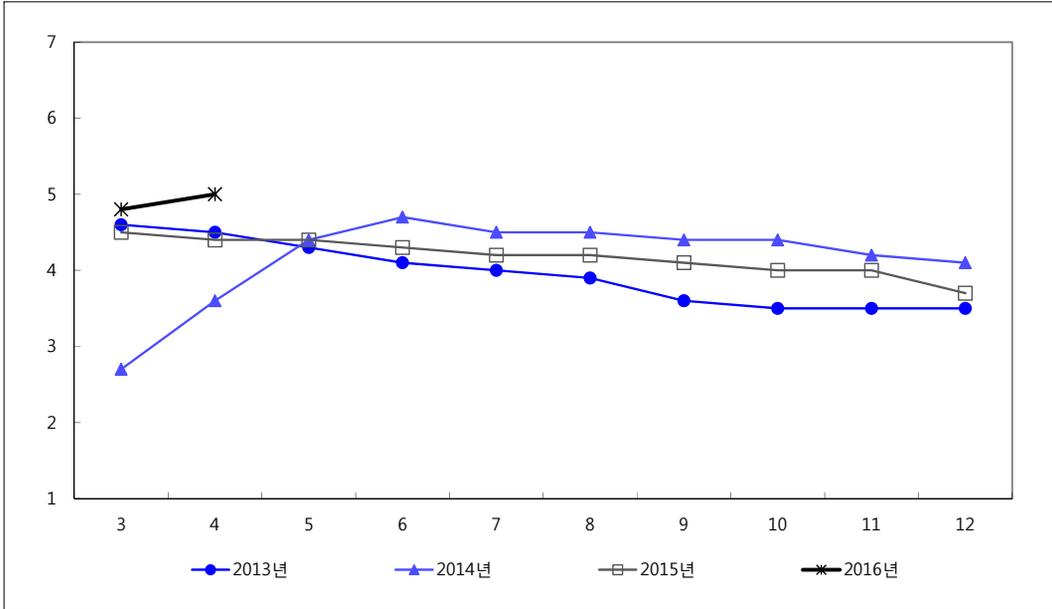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폭 둔화

- 2016년 3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2,57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4% 상승함.
 - 이외에도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4%), 도매 및 소매업(6.5%), 운수업(6.4%), 금융 및 보험업(6.1%) 부문은 6%가 넘는 임금상승률을 보임.
 - 임금상승폭이 가장 저조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전년동월대비 0.3% 상승에 그쳤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1%), 교육서비스업(1.3%), 제조업(1.7%) 부문 또한 1%대 상승에 그침.
 - 2016년 3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7,456천 원)이며,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48천 원)임.
- 2016년 1~3월 평균 산업별 임금총액 또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함.

- 1~3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협회·단체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8.9% 상승했으며, 이외에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8%), 여가관련 서비스업(7.4%), 운수업(7.2%) 등은 평균 임금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1~3월 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187천 원)인 반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9천 원)으로 나타남.

〈표 2〉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4	2015	2016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3,190 (2.5)	3,300 (3.5)	3,356 (3.1)	3,174 (3.9)	3,534 (5.3)	3,283 (3.4)
광업	3,480 (-2.1)	3,676 (5.6)	3,572 (2.4)	3,513 (2.3)	3,759 (5.2)	3,623 (3.1)
제조업	3,506 (4.0)	3,617 (3.2)	3,761 (2.1)	3,388 (4.8)	3,988 (6.0)	3,446 (1.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54 (0.2)	5,856 (5.4)	5,799 (3.8)	7,166 (6.3)	6,187 (6.7)	7,456 (4.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812 (2.5)	2,945 (4.8)	2,890 (3.5)	2,813 (4.1)	3,043 (5.3)	2,927 (4.0)
건설업	2,497 (3.4)	2,591 (3.8)	2,642 (4.4)	2,567 (5.5)	2,758 (4.4)	2,656 (3.5)
도매 및 소매업	3,206 (1.2)	3,292 (2.7)	3,299 (3.2)	3,180 (1.1)	3,494 (5.9)	3,387 (6.5)
운수업	2,805 (2.7)	2,952 (5.3)	2,847 (6.1)	2,736 (5.6)	3,052 (7.2)	2,913 (6.4)
숙박 및 음식점업	1,785 (0.7)	1,824 (2.2)	1,828 (3.0)	1,842 (6.3)	1,869 (2.3)	1,848 (0.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05 (-0.8)	4,012 (2.7)	4,046 (3.0)	3,957 (2.1)	4,255 (5.2)	4,000 (1.1)
금융 및 보험업	5,234 (3.5)	5,488 (4.9)	5,862 (8.0)	5,760 (9.0)	6,145 (4.8)	6,110 (6.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3 (2.3)	2,478 (6.7)	2,465 (6.4)	2,394 (5.0)	2,581 (4.7)	2,490 (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19 (4.2)	4,561 (3.2)	4,319 (-1.4)	4,317 (0.9)	4,698 (8.8)	4,528 (4.9)
사업서비스업	1,924 (2.2)	2,002 (4.1)	1,974 (3.1)	1,946 (3.0)	2,045 (3.6)	2,021 (3.8)
교육서비스업	3,375 (3.5)	3,483 (3.2)	3,705 (4.0)	3,191 (0.8)	3,782 (2.1)	3,231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00 (1.4)	2,772 (2.7)	2,784 (5.6)	2,723 (6.2)	2,873 (3.2)	2,829 (3.9)
여가관련 서비스업	2,398 (3.1)	2,512 (4.7)	2,431 (0.4)	2,377 (-1.4)	2,611 (7.4)	2,578 (8.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49 (1.0)	2,326 (3.4)	2,247 (1.3)	2,175 (0.7)	2,447 (8.9)	2,337 (7.4)

-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1~3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증가폭 둔화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3.3%)·대규모(0.9%) 사업체 모두 상

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가 컸음.

- 2016년 3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가 컸던 데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의 영향이 컸음.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전월까지 4%가 넘었던 정액급여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다 초과급여(-8.6%)와 특별급여(-0.6%)의 감소에서 비롯됨.
- 반면에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특별급여증가폭의 둔화에서 기인하고 있음. 중소기업 사업체의 정액급여는 오히려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3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 평균 대비 각각 4.0%, 5.3% 상승함.

- 특히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표 3〉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4	2015	2016			
				1~3월	3월	1~3월	3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 체	3,190 (2.5)	3,300 (3.5)	3,356 (3.1)	3,174 (3.9)	3,534 (5.3)	3,283 (3.4)
	상용임금총액	3,378 (2.4)	3,490 (3.3)	3,540 (2.8)	3,351 (3.5)	3,729 (5.3)	3,473 (3.6)
	정액급여	2,660 (3.2)	2,749 (3.3)	2,720 (3.0)	2,720 (2.6)	2,826 (3.9)	2,817 (3.6)
	초과급여	201 (9.3)	216 (7.4)	208 (10.1)	220 (9.9)	217 (4.6)	228 (3.8)
	특별급여	516 (-3.7)	525 (1.6)	613 (0.0)	411 (6.6)	686 (11.9)	427 (3.9)
	비상용임금총액	1,387 (0.7)	1,424 (2.7)	1,409 (-0.5)	1,384 (-0.3)	1,439 (2.1)	1,413 (2.1)
5~299인	소 계	2,836 (2.6)	2,938 (3.6)	2,945 (4.3)	2,856 (4.6)	3,063 (4.0)	2,951 (3.3)
	상용임금총액	3,008 (2.4)	3,110 (3.4)	3,111 (4.0)	3,018 (4.1)	3,237 (4.1)	3,124 (3.5)
	정액급여	2,504 (2.9)	2,577 (2.9)	2,559 (3.0)	2,556 (2.9)	2,644 (3.3)	2,639 (3.2)
	초과급여	172 (7.5)	184 (6.6)	174 (8.4)	183 (7.0)	188 (7.7)	199 (8.5)
	특별급여	332 (-3.6)	349 (5.3)	378 (9.3)	278 (13.7)	406 (7.3)	287 (3.2)
	비상용임금총액	1,390 (-0.1)	1,434 (3.2)	1,407 (-0.8)	1,402 (0.1)	1,440 (2.4)	1,440 (2.8)
300인 이상	소 계	4,678 (5.2)	4,849 (3.7)	5,179 (4.5)	4,571 (5.9)	5,453 (5.3)	4,613 (0.9)
	상용임금총액	4,827 (5.3)	5,017 (3.9)	5,323 (4.6)	4,740 (6.2)	5,606 (5.3)	4,794 (1.1)
	정액급여	3,272 (5.8)	3,438 (5.1)	3,388 (5.4)	3,401 (4.3)	3,521 (3.9)	3,493 (2.7)
	초과급여	316 (16.9)	349 (10.4)	346 (19.6)	373 (22.1)	330 (-4.6)	341 (-8.6)
	특별급여	1,239 (1.5)	1,230 (-0.7)	1,589 (0.2)	965 (7.3)	1,755 (10.5)	959 (-0.6)
	비상용임금총액	1,354 (11.1)	1,329 (-1.8)	1,437 (2.7)	1,223 (-4.4)	1,425 (-0.8)	1,185 (-3.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3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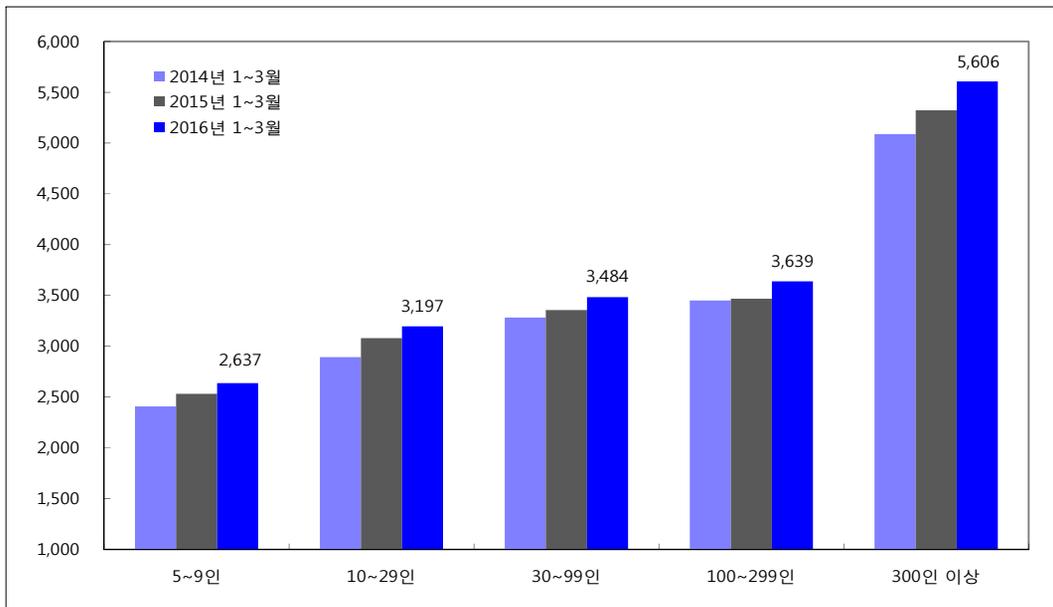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은 추세와 다르게 임금상승폭이 더욱 확대됨. 이는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의 정액 급여증가율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특별급여증가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특별급여증가율은 산업별로 편차가 큼. 부동산업 및 임대업(90.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6.8%), 도매 및 소매업(4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0.4%) 등은 전년동평균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중소기업의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중소기업 중에서 정액급여증가율이 컸던 산업은 광업(5.9%), 운수업(5.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1%), 부동산업 및 임대업(4.8%), 제조업(4.6%)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3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주 :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1~3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상승을 견인한 임금 세부내역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정액급여의 증가의 영향이 컸던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정액급여증가율을 오히려 둔화된 가운데 특별급여의 증가가 컸던 데 기인함.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80.4시간(월력상 근로일수 동일)

- 2016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0.4시간(0.3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7.2시간(-0.1%↓), 소정실근로시간은 174.2시간(0.1%↑), 초과근로시간은 13.0시간(-1.5%↓)임.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13.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함.
- 2016년 1~3월 평균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0.2시간 감소한 167.6시간임. (월평균 근로일수 동일)
 - 상용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72.7시간(-0.1%↓)이었으며 초과근로시간(12.3시간, -2.4%↓)의 감소가 컸음.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13.1시간으로 나타남.

〈표 4〉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5	2016			
			1~3월	3월	1~3월	3월
전체 근로시간	171.4(-0.7)	172.6(0.7)	167.9(-1.3)	180.7(3.6)	167.6(-0.2)	180.4(-0.2)
상용 총근로시간	177.1(-0.6)	178.4(0.7)	172.9(-1.3)	187.3(3.5)	172.7(-0.1)	187.2(-0.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4.1(-0.9)	165.6(0.9)	160.3(-1.4)	174.0(3.7)	160.4(0.1)	174.2(0.1)
상용 초과근로시간	12.9(3.2)	12.8(-0.8)	12.6(0.8)	13.2(1.5)	12.3(-2.4)	13.0(-1.5)
비상용근로시간	117(-4.5)	114.6(-2.1)	115.0(-4.6)	114.9(-1.0)	113.1(-1.7)	113.3(-1.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3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6년 3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산업별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4.5%)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2.0%) 부문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으며 제조업 또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이었으며, 이외에도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1%),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8%) 부문에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
 - 2016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9.5시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95.3시간)이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산업은 건설업(153.8시간)임.

- 2016년 1~3월 평균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2.1%)으로 나타남.
 - 월평균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임.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히스·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5%),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1%) 등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더불어 교육서비스업(-1.5%)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3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5	2016			
			1~3월	3월	1~3월	3월
전 산업	171.4(-0.7)	172.6(0.7)	167.9(-1.3)	180.7(3.6)	167.6(-0.2)	180.4(-0.2)
광업	179.4(-0.7)	179.2(-0.1)	173.6(-1.4)	184.5(-0.2)	173.4(-0.1)	185.4(0.5)
제조업	185.4(0.2)	186.3(0.5)	181.2(-1.6)	195.7(2.6)	180.1(-0.6)	195.3(-0.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5(-1.7)	170.8(0.2)	167.0(-1.4)	169.3(0.1)	163.7(-2.0)	172.4(1.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2.3)	177.8(0.0)	171.0(-3.3)	183.8(1.7)	173.6(1.5)	185.8(1.1)
건설업	148.5(-2.8)	147.4(-0.7)	144.3(-3.4)	154.2(2.9)	143.3(-0.7)	153.8(-0.3)
도매 및 소매업	172.3(-0.6)	172.9(0.3)	168.2(-1.2)	181.9(3.6)	167.7(-0.3)	181.1(-0.4)
운수업	173.1(-2.6)	173.9(0.5)	169.8(-0.9)	179.9(2.4)	169.8(0.0)	180.2(0.2)
숙박 및 음식점업	175.2(-1.2)	175.3(0.1)	172.3(-1.3)	182.2(4.4)	168.6(-2.1)	178.6(-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1.9(-0.7)	164.3(1.5)	159.3(-1.4)	174.0(4.8)	159.6(0.2)	174.0(0.0)
금융 및 보험업	163.4(0.4)	164.3(0.6)	160.1(-1.8)	174.6(3.9)	159.6(-0.3)	174.9(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1(-0.7)	192.8(1.4)	187.8(-0.4)	200.9(4.6)	188.5(0.4)	199.5(-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0.4)	164.9(1.0)	159.3(-1.6)	174.2(3.9)	159.6(0.2)	174.3(0.1)
사업서비스업	171.9(-0.2)	173.2(0.8)	168.4(-0.8)	179.0(2.3)	168.3(-0.1)	178.4(-0.3)
교육서비스업	152(0.9)	151.5(-0.3)	148.2(-3.3)	161.1(2.9)	146.0(-1.5)	153.9(-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6(-1.4)	171.5(1.1)	165.9(-0.6)	179.0(4.5)	165.9(0.0)	179.4(0.2)
여가관련 서비스업	158.9(0.6)	160.6(1.1)	154.3(-1.4)	165.4(4.4)	154.8(0.3)	165.0(-0.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9(-2.7)	163.7(0.5)	158.2(-2.4)	169.4(2.9)	160.0(1.1)	17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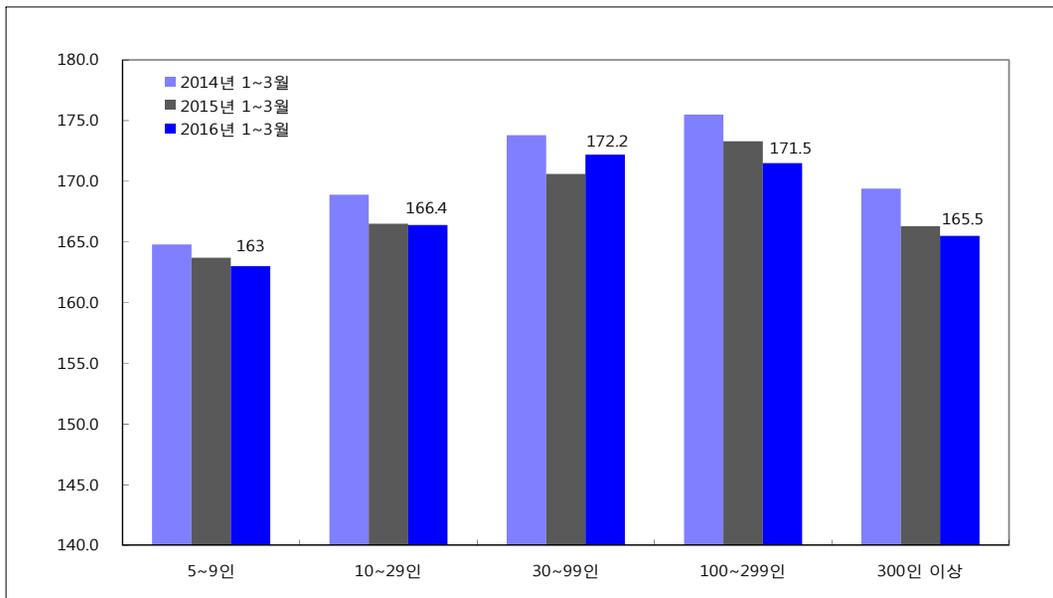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3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중소기업(5~299인)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1.2시간(-0.2%)이며,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에서의 총근로시간은 176.9시간(-0.3%)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175.6시간(-0.6%), 10~29인 사업체는 183.6시간(-0.8%)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10~29인 사업체와 30~99인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소폭 증가함.
- 2016년 1~3월 평균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각각 -0.1%, -0.5% 감소함.
-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 근로자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평균 대비 0.5% 감소함.
 - 중소기업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163.0시간(-0.4%), 10~29인 사업체는 166.4시간(-0.1%), 100~299인 사업체는 171.5시간(-1.0%)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감소했으나 30~99인 사업체는 172.2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0.9% 증가함.

(그림 4)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3월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가계수지 동향

◆ 2016년 1/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6년 1/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사업소득(3.3%)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함(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0.2% 감소).
 - 전국가구 경상소득의 증가는 이자소득 등이 줄어 재산소득(-21.0%)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이 0.3% 증가한 데다 사업소득(3.3%)과 이전소득(0.7%)의 증가로 비롯됨. 비경상소득도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주거·수도·광열(-3.6%), 의류·신발(-1.8%)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류·담배(22.2%), 가정용품·가사서비스(7.4%), 교통(2.5%), 음식·숙박(2.2%)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하였음(실질기준 0.4% 감소).

〈표 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5				2016	
	1/4분기		4/4분기		1/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517.3	26	4,301.6	0.9	4,555.2	0.8
경상소득	4,325.4	2.8	4,175.7	1.1	4,358.9	0.8
근로소득	3,013.8	3.8	2,894.8	0.9	3,021.8	0.3
사업소득	821.6	-4.6	850.3	0.4	848.6	3.3
재산소득	23.7	17.9	17.6	-18.2	18.7	-21.0
이전소득	466.4	10.4	413.0	4.7	469.7	0.7
비경상소득	191.9	-2.1	125.9	-4.8	196.3	2.3
소비지출	2,653.4	0.0	2,549.7	1.7	2,668.8	0.6
비소비지출	848.8	1.0	773.9	1.6	851.6	0.3
처분가능소득	3,668.4	3.0	3,527.7	0.7	3,703.6	1.0
흑자액	1,015.0	11.6	978.0	-1.9	1,034.8	1.9
흑자율	27.7	2.1	27.7	-0.7	27.9	0.3
평균소비성향	72.3	-2.1	72.3	0.7	72.1	-0.3

주 :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의 증감률은 %p.

자료 : 통계청(2016. 5),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 비소비지출의 경우, 비경상조세(-6.0%), 경조비 등 가구간 이전지출(3.3%), 종교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2.8%)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조세(5.1%),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및 보험료 이상으로 사회보험(3.5%), 연금(3.4%)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음.

○ 2016년 1/4분 처분가능소득은 370만 4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함.

○ 2016년 1/4분기 소득 1분위·2분위 가구 평균소득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9%, 0.9% 감소함.

– 근로소득은 3분위·5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감소했으며, 가처분소득은 1분위·2분위 가구에서 감소하였음.

〈표 2〉 2016년 1/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 천 원, %, %p)

	I 분위		II 분위		III 분위		IV 분위		V 분위	
	금액	증감률 (차)								
가구원 수	2.43명		2.93명		3.30명		3.46명		3.54명	
가구주 연령	60.6세		50.5세		48.0세		47.6세		47.9세	
소득	1,410.3	-2.9	2,870.4	-0.9	4,037.2	1.1	5,383.4	0.9	9,066.5	1.8
경상소득	1,317.4	-2.7	2,770.3	-1.0	3,931.0	1.2	5,244.8	1.2	8,523.2	1.4
근로소득	575.5	-7.4	1,589.5	-7.0	2,532.7	1.9	3,730.7	-0.3	6,674.2	2.5
비경상소득	92.9	-6.0	100.1	3.0	106.1	-4.3	138.7	-9.1	543.4	8.7
가계지출	1,594.6	-2.4	2,498.0	-1.5	3,292.9	-1.2	4,080.1	-0.9	6,131.5	4.1
소비지출	1,329.6	-1.3	2,016.8	-1.4	2,585.3	-1.7	3,110.8	0.4	4,298.2	3.8
비소비지출	264.9	-7.6	481.2	-2.1	707.5	1.0	969.4	-4.5	1,833.3	4.8
처분가능소득	1,145.4	-1.8	2,389.2	-0.6	3,329.6	1.1	4,414.1	2.2	7,233.2	1.1
흑자액	-184.3	1.6	372.4	3.9	744.3	12.4	1,303.3	7.0	2,935.0	-2.7
흑자율	-16.1	-0.5	15.6	0.7	22.4	2.2	29.5	1.3	40.6	-1.6
평균 소비성향	116.1	0.5	84.4	-0.7	77.6	-2.2	70.5	-1.3	59.4	1.6

자료 : 통계청(2016.5), 『2016년 1/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5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220건
 - 지난 5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263건)보다 43건 낮은 수치임.
- 지난 5월 조정성립률 66.7%
 - 지난 5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6.8%에 비해 9.9%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5년, 2016년 5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6.5	220	181	104	38	66	52	5	47	6	19	39	66.7
2015.5	263	237	108	48	60	82	15	67	14	33	26	56.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78건
 - 지난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01건)보다 123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8.1%(53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1.9%(86건)를 차지함.

〈표 2〉 2015년, 2016년 5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6.5	178	139	53	0	20	10	56	0	39
2015.5	301	275	93	0	25	99	58	0	2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6,685건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6,878건)보다 193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5.6%(748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84.4%(4,063건)를 차지함.

〈표 3〉 2015년, 2016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6. 5	6,685	4,811	646	102	793	318	1,905	1,047	1,870
2015. 5	6,878	5,215	521	125	809	327	2,060	1,373	1,66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는 6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함.
 -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고 밝힘.
 -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됨.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 원(신용제재 5,176만 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함.
-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추진하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스마트 근로감독은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뜻함.
 -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0개 관서(140명)에서 47개 전 관서(187명)로 확대하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16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함(근로실태는 2016년 3월 기준).
 -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노동수요측(사업체)의 관점에서 근로자 수, 입직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노동정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경기전망 등을 위한 조사임.
 - 2016년 3월,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8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109천 원) 증가함.
 -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3시간(-0.2%) 감소함.
 - 2016년 4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6,3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8천 명(+2.2%) 증가함.

◆ 양대 노총, 공공·금융노동자 결의 대회

- 지난달 18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10만여 명(경찰 추산 5만 5천 명)의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함.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성과연봉제와 공기업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이 끝까지 투쟁해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약속함.
 -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불법 사례를 조사한 당 진상조사단이 곧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말 대선 국면을 맞아 공공성을 사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함.
 - 집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들은 ‘해고연봉제 저지’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성과주의 강요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며 성과연봉제 도입 및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함.
-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가 변화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오는 9월 2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함.
 - 이날 대회에서 공대위 공동대표들은(김문호 금융노조·김주영 공공노련·이인상 공공연

맹·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등) “정부가 불법적 해고연봉제(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저성과자 해고)를 계속 추진한다면 오는 9월 23일 40만 공공·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고연봉제 및 강제퇴출제 강압이 멈출 때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 5월 28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씨가 혼자 일하다가 역사 안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음.
 - 올해 3월 17일 서울시와 노동계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말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면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를 자회사를 설립해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노조 반대로 무산됨.
 - 앞서 발생한 성수역과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와 같이 여전히 구의역 사고도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수칙이나 서울메트로 역무원과의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음.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는 같은 달 30일 “스크린도어 참사는 우연이 아니라 업무 외주화가 가져온 필연적 참사”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하철 검수·정비업무 직영화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힘.
-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자고 요구함.
 - 인권위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할 때 하청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도급 시 인가받아야 하는 유해·위험업무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개정을 권고하였음.
 - 공공운수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 확대와 평가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부터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인 은성PSD를 포함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고가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됐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 확대를 통한 하청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자 사망사건(5. 28.)」, 「남양주 지하철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 1.)」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가 안전관리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로 위협이 이전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원청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우선,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어, 6월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내용에는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사내 도급 인가 제도 강화 등이 포함됨.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함.
 - 위반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도급 인가 시, 인가의 유효기간(3년 이내)을 정하고, 기간만료 시 연장, 주요 인가사항 변경 시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함.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그간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함.
 - 건설업에서 하나의 공사현장에 다수의 시공사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공사 간 공사일정 관리, 위험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고의적인 산재은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조항(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도입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모든 민

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계, “조선소 인력구조조정 반대” 파업 예고

-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인력구조조정안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는 조선업의 발전방향 없이 인력만 줄이는 회사의 구조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임.
 - － 현대중공업노조는 회사의 분사계획을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와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하청 확대정책'으로 보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파업수순을 밟고 있음.
 - － 노조 관계자는 “사측 구조조정안을 보면, 정규직·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을 뿐 조선업 장기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이 없다”며 “7월 초 파업준비를 완료하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지역 민주노총 노조들의 파업에 맞춰 공동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에서도 노조와 노동자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음.
 - －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이유와 이후 투쟁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거제시청 앞에서 개최하고, “삼성중공업 구조조정 중단 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지역사회에 호소함.
 - － 변성준 위원장은 “조선소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지역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공동투쟁을 호소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상황이 심각해지면 파업을 결정한 대우조선노조와 함께 하는 싸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 대우조선노조는 이미 파업을 결의한 상태로 파업돌입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임.
 - － 대우조선노조 관계자는 “해고의 칼날이 눈앞에 나타나 싸워야만 하는 단계가 도래하면 양측이 큰 싸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업, 정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지난달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함.
 - －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분담’을 구조조정 원칙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기업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최대

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필요시 각 기업에 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중소조선사에는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자구노력이 없으면 자금 지원은 없다는 입장임.

○ 조선업 3사는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해운·조선업종의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최대 1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임.

- 조선 3사는 현대중공업 3조 5천억 원, 삼성중공업 1조 5천억 원, 대우조선해양 5조 3천억 원 등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고, 이들은 설비·자회사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과 인원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는 구조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 원을 현물 출자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고, 또한 한국은행과 함께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간접출자 방식으로 국책은행 자본을 늘릴 계획임.
-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더불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진행하기로 한다며 두 은행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 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9월까지 인력·조직 축소를 포함한 조직·인력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일호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한국경제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지 없는 과제”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해운업과 철강·유화 등 현안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함.

◆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착수

○ 고용노동부는 6.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민관합동조사단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단 활동 계획을 확정함

- 민관합동조사단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업종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정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실사 등 조사를 실시하게 됨.
- 민관합동조사단은 6월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를 목표로 밀도있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현장조사는 6. 15~16일 양일간 울산·거제(1박 2일), 6. 20. 영암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현장조사 전후로 고용보험 DB 등 각종 통계 및 관련자료 분석·검토를 병행할 계획임.
-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누어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심층조사를 분담하여 조선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수준, 효율적인 전달체계, 지역주민 및 장기 실직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 낼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합동조사단 활동이 향후 더 있을 수 있는 산업구조개편과 체질개선 과정에서 고용의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밝힘.

◆ 정부,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민영화

- 지난달 14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공개함.
 - 조정안에 따르면 5개 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되며, 29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됨.
 - 하지만 기능조정안의 핵심은 전력 판매·가스 도매·발전 정비·원자력 설계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을 상장하거나 유상증자를 해서 민간 지분을 확대하는 것임.
-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라며 즉시 반발함.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상장은 사실상 민간 자본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영화의 길을 트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발표는 ‘에너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함.
 - 공공산업노조연맹도 성명을 통해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핵심 자산인 석유, 가스, 광물, 전력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주식 상장과 민간이양, 경쟁체제 등 온갖 이름의 유사 민영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지속 추진해온 과정에서 거대 재벌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밝히고,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기능조정은 결국 재벌특혜, 요금

폭등, 안전위협을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비판함.

-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기능조정안은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난달 13일 열린 정부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충분히 많고 전문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부문에 넘기는 것”이라며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데 대해서는 “(상장하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는다.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고 말함.

◆ 대법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근로자는 정규직

-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
 - 지난달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 ※ 참고 :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한국지엠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본 것임.
 -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사해 하청업체를 바꿔 가며 조립·도장·엔진가공 등 직접생산공정과 물류 등 생산공정에서 일을 하였고, 2013년 5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경남법률원)는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작업공정을 가진 제철회사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함.
 -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7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KL**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정재우, 동향분석실 연구원)